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51
----------	-----

2022. 1. 26.(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황규철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2년 1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월 19일

-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규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 추진으로 급변하는 자동차 업계 환경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정비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21년 친환경차의 생산, 내수, 수출 모두 전년 연간대수를 뛰어 넘어 자동차 산업의 新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의 증가가 본격화되었음.
- 위와 같이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기조로 인하여 내연기관 정비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내연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역내 자동차 관련 정비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례 제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 울산광역시에서 시행 중이며, 내연기관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육성과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음.

다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측면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안정 등 지원과 성장 측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의 제정은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지원대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대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2. 1. 6.~'22. 1.12.)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산업 변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상위법(「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조례로 제정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불수용” 의견을 제출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탄소중립,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확대 등 정부정책에 따라 급변하는 자동차업계의 환경변화에 따른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정비업종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자동차 정비업계에 대한 인력개발과 신기술 교육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수 정 안 요 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 19. 서동학 의원
- 수정이유
 - 조례안 제명을 수정하고 수정된 제명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수정·보완하기 위함
- 수정 주요내용
 - 제명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을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함.
 - 제1조 중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로 함.
 - 제2조에 “자동차정비업”의 정의를 추가함.
 - 제3조 중 “지역산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함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을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으로 한다.

제1조 중 “내연시장” 을 “시장” 으로,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함으로써” 를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자동차정비사업자” 란” 을 ““자동차정비 사업자” 란” 으로 한다.

1. “자동차정비업” 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제3조 중 “지역산업” 을 “자동차정비업” 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 을 “지원”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를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을 “자동차정비업을”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자동차정비사업자” 를 각각 “자동차정비업” 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u>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u></p>	<p><u>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u>내연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u><신 설></u></p> <p>1. “<u>자동차정비사업자</u>”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p> <p>2. · 3. (생략)</p>	<p>제1조(목적) ----- ----- <u>시장</u>----- ----- <u>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u> ----- -----.</p> <p>제2조(정의) ----- -----.</p> <p>1. “<u>자동차정비업</u>”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u>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 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u>을 말한다.</p> <p>2. “<u>자동차정비 사업자</u>”란 ----- -----.</p> <p>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p>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지역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자동차정비사업자
2. 종사자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자동차정비사업자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
----- 자동차정비업-----

-----.

제4조(지원대상) ----- 지원-----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
를 대상으로 한다.

- <삭제>
<삭제>

제5조(지원사업) ----- 자동차정비업을 -----

-----.

1. ~ 3. (현행과 같음)
4. 자동차정비업 -----

5. ----- 자동차정비업-----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 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 (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자동차 정비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시설개선 사업비와 정비 신기술 직무 교육비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3. 관련조문

- 안 제5조(지원사업)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원동기, 전문)에 필요한 시설개선 지원비 / (1개소당 150만원) 적용
 - 100개소당 1.5억원(도0.45, 시군1.05) 필요(시군과 30:70 비용 부담)
-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원동기, 전문)에 필요한 직무교육비 / (1인당 50만원) 적용
 - 100인당 0.5억원(도0.15, 시군0.35) 필요(시군과 30:70 비용 부담)

나. 추계 결과 :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10억원 필요.

(매 1년 100개소, 100인 대상)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 시·군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시설개선 지원사업	도비 (시설비)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시군비 (시설비)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직무교육 지원사업	도비 (교육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시군비 (교육비)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재 원 조 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자체 수입	소 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지방세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세외수입						
시·군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특별회계							